서울특별시교육청 소아·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관련 번호 1046

제안연월일 : 2019년 12월 17일

제 안 자:교육위원장

1. 수정이유

○ 동 조례안의 「소아·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위원회」의 설치·운영에 있어 그 기능이 유사·중복되는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함.

○ 교육감의 소아·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사업 중 교육감이 관장하는 사무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을 삭제함.

2. 주요내용

○ 위원회 설치·구성 사항 중 「소아·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위원회」 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단서를 신설함(안 제6조제1항).

○ 소아·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사업 중 "저소득 가정 소아·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슐린 등의 제공"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(안 제7조제3호).

3. 참고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교육청 소아·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소아·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6조제1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.

다만, 소아·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소아·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.

안 제7조제3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호를 제3호로 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제6조(위원회의 설치·구성) ① 교육감은 소아·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 등을 위한 시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아·청소년 당뇨병환자 지원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설치·구성할 수 있다. <단서 신설>	제6조(위원회의 설치·구성) ①
② ~ ③ (생 략)	② ~ ③ (원안과 같음)
제7조(사업추진) 교육감은 소아·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	제7조(사업추진) (원안과 같음)
1. ~ 2. (생 략)	1. ~ 2. (원안과 같음)
3. 저소득 가정 소아·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슐린 등의 제공	<삭 제>
<u>4.</u> (생 략)	<u>3.</u> (원안 제4호와 같음)

서울특별시교육청 소아·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소아·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·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"소아·청소년 당뇨병 환자"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「유아교육법」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중 당뇨병 진단을 받은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.
- 제3조(책무)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은 소아·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4조(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교육감은 소아·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 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(이하 "지원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 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소아·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교육 차별금지
- 2. 소아·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조기발견
- 3. 소아·청소년 당뇨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·홍보
- 4. 소아·청소년 당뇨병 환자 응급조치 등의 보호체계
- 5. 효과적인 소아·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
- 6. 그 밖에 소아·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- 제5조(실태조사)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·시 행하기 위하여 소아·청소년 당뇨병 환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.
- 제6조(위원회의 설치·구성) ① 교육감은 소아·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 권 및 건강권 보장 등을 위한 시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아·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·구성할 수 있다. 다만, 소아·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소아·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.
- 1.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
- 2. 제7조에 따른 사업추진
 - 3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
 -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.
- 제7조(사업추진) 교육감은 소아·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 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- 1. 소아·청소년 당뇨병 관리에 필요한 기구 등의 보급
- 2. 소아·청소년 당뇨병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·홍보
- 3. 그 밖에 소아·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필 요한 사업
- 제8조(사무위탁) ① 교육감은 소아·청소년 당뇨병에 대한 인식개선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및 단체 등(이하 "기관 등"이라 한다)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경비

-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9조(협력체계 구축) 교육감은 소아·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효과적인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관계부처, 서울특별시,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- 제10조(통계관리) 교육감은 소아·청소년 당뇨병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 보를 수집·관리할 수 있다.
- 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